

접수번호 01-082 정리번호 01388

품질보증체제 인증갱신심사계약서

- 본 계약서는 인증유효기간 동안 보존하셔야 합니다.-

작성일: 01년 5월 25일





_	갑	(주)아이피에스	대표자	이 용 한
	을	(주)중소기업인증센터	대표자	김 용 화

상기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품질보증체제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한다.

1. 인증심사

1.1 인증규격 : ☑ KS A / ISO 9001(1998/ 1994년 개정판) / □ ISO 9001 : 2000년 판

1.2 인증범위

1.2..1 사업장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번지

1.2..2 제 품: Nano-ETCH, Nano-ALD의 설계·개발 생산 및 이에 대한 부가서비스

1.3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

"갑"이 ISO 9001/2/3:1994년판으로 심사를 받을 경우는 반드시 2003년 12월15일 이전에 ISO 9001:2000년판으로 전환되어야만 인증유지됨)

1.4 심사기준 : 해당규격/법규,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가 공표한 세부인증심사기준 및 "갑"의 품질매뉴얼 등 품질시스템 문서

1.5 심사대상 : "갑"의 경영자 및 품질관련 전 부서

1.6 심사팀 : 품질경영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보유한 심사원 중에서 "을"이 선정하여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7 심사절차 : 세부절차는 별첨문서 참조

. 1단계 : 예비심사 ("갑"의 요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 2단계: 문서심사 ("갑"의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실시가능)

. 3단계 : 본(현장)심사

. 4단계 : (해당 시) 현장 확인심사

. 5단계 : 시정조치 확인

. 6단계 : 운영위원회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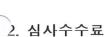
. 7단계 : 인증서 발급 (운영위원회 통과 시에 한함)

1.8 심사일정 : 각 단계별로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1.9 사후관리: "을"은 인증일로부터 3년 동안 1, 2, 3차 사후관리는 6개월 주기로 실시하고,

4차 사후심사는 3차이후 1년이내에 실시한다.(단, 갱신인 경우는 3회/3년으로 함.) "을"은 "갑"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기 사후관리심사와 별도로 특별사후관리심사를 실시한다.



2.1 심사금액 (VAT 별도)

구 분	산 출 근 거	금 액		
문서심사비	₩ <u>550,000</u> x <u>1</u> M.D	550,000원		
본심사비	₩ <u>550,000</u> x <u>3</u> M.D	1,650,000원		
현장확인심사비	₩ <u>550,000</u> x (?) M.D	? 원		
합 계	- Williams	2,200,000원		

- 2.2 "갑"은 "을"에게 본 계약체결 동시에, 신청비를 납부한다.
- 2.3 "갑"의 현장심사시 발생하는 "을"의 심사원에 대한 출장비(일비:식비포함, 교통비, 숙박비)는 "갑"이 부담한다.

구	분	부 담	ш	_		
T Z		지 방	H	고		
교통	를 비	새마을호 또는 우등고속		(0.5일은		
일	Ы	(20,000 × 심사일수) + 20,000(이동일수)	20,000 × 심사일수	1일로 적용)		
숙별	나 비	충청권,강원(항공외지역): - 심사일수 x 40,000/1박 영남,호남,제주,강원(항공): - (심사일수+1) x 40,000	없 음	심사원 수도권(서 기		

- 2.4 "갑"은 "을"이 심사절차에 따라 각 단계별로 심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청구하는 심사수수료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한다.
- 2.5 사후관리비는 각 회수별 사후관리 실시 이전에, "을"의 청구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사후관리비	₩ <u>550,000</u> x <u>2</u> M.D x 3회/3년	3,300,000원
-------	---	------------

2.6 "을"은 "갑"이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중인심-40-45, REV. 11) 3/6



3. 인증서

- 3.1 "을"은 "갑"에게 1.7항의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통과하였을 경우에 국문과 영문의 인증서 2세트를 발급한다.
- 3.2 "갑"은 인증서 발급전까지 심사수수료를 완납한다.
- 3.3 "갑"이 인증서를 추가로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세트당 ₩50.000씩 부담한다.
- 3.4 "갑"은 인증서 및 인증표시를 사용함에 있어 별도로 "을"이 제시하는 "인증서 및 인증표시 사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인증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4. 일반사항

- 4.1 "을"은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기간동안에 입수한 "갑"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4.2 인증유지의 의무
- 4.2.1 "갑"은 "을"의 인증기간 동안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품질보증체제를 유지한다. 품질보증체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인증을 정지 시키고 지정된 기간내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정조치가 제한된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갑"에 부여된 인증서는 "갑"의 자산이나, 인증이 정지되면 즉시 "을"에게 반납하여야 하며,"을"은 인증정지의 해제시 필요한 경우 0.5M.D의 특별사후 관리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4.2.2 "갑"은 품질보증체제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소속직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접수된 모든 지적 및 불만사항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결과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2.3 "갑"은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KAB)의 직접 특별사후관리 심사시, 이에 적극 협조한다.
- 4.3 심사편의의 제공

"갑"은 "을"의 원활한 인증심사를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정보, 자료와 시설물을 제공한다.

4.4 심사계획의 변경

"갑"은 을이 제시한 심사계획(일정 및 심사원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4.5 심사수수료의 변경

본 계약기간 중에 "갑"의 조직변동 등으로 인하여 심사일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을"의 심사수수료 금액이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갑", "을" 상호협의하에 심사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4.6 변경사항의 통보

"을"은 KS A 9000 규격의 변경 또는 국가의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의 변경시에는 "갑"에게 통보하여 일정기간의 품질보증체제 정비기간을 주며, "갑"은 인증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제품 등의 변동과 조직 등 중대한 품질시스템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 통보한다. 중대한 변경은 다음과 같다.

- ① 품질매뉴얼의 전반적인 개정 및 폐지 등 인증된 품질체제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핵심 요소 또는 전반적인 변경
- ② 소유주, 이사회, 품질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핵심부서의 통폐합 등 조직 및 주요 경영진의 변경
- ③ 정관, 품질방침 및 공정 등 중요한 방침 및 절차의 변경
- ④ 품질매뉴얼에 규정된 설비중 품질시스템의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 설비의 변경, 폐지 또는 반출 등.

4.7 불만처리

"갑"은 품질보증체제의 운영에 관하여 "갑"의 이해당사자로부터 불만을 처리하는 절차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을"은 매회의 사후관리 때마다 "갑"의 불만처리 및 시정조치 내용을 검토한다.

4.8 계약서의 변경

본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 "을" 상호 협의하여 수정 및 추가할 수 있다. (서면으로 통보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 한함)

4.9 배상 및 전가

4.9.1 배상

"갑"은 "을"이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인증서 및 인증표시사용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9.2 인증의 인계

"을"은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도산 등으로 인증사업의 영위가 곤란할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본 계약상의 책임과 권리를 "을"과 협정된 타 인증기관에 인계한다.

4.9.3 전가의 금지

본 계약상의 책임과 권리를 "갑", "을" 모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4.10 법적 처리

4.10.1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체결 전에 "을"이 제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하며, 만일 "갑", "을"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분쟁의 중재를 의뢰하고 쌍방은 그 중재에 따른다.

(중인심-40-45, REV. 11) 5/6



4.10.2 소송

본 계약사항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4.11 계약의 성립 및 해지

- 4.11.1 본 계약은 "갑"과 을" 중, 최종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성립하여 인증기간동안 유효하다. 본 계약체결의 증명으로써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4.11.2 "갑", "을" 쌍방은 본 계약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1개월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12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안서에 수록된 내용과 "갑"·"을"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갑" (주소)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번지

(성명)	(주)아이피에스							용	한	(a) (a) (b) (c) (c) (c) (c) (c) (c) (c) (c) (c) (c
(일자)	2001	년	T	월	25	일				T S NO

"을"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성명)	(주)중소기업인증센터						용	화	(01)
(일자)	2001	년	5	월 소송	일				